



#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문

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(사)께 감사드립니다.

2014년 10월 정기 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미사용 시설물 감면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부과기간 : 2014. 8. 1 ~ 2015. 7. 31
- 감면대상 : 부과기간 중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
- 신청서류 :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자료(미 첨부시 감면 제외됨)
- 신청방법
  - ①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작성 → 증빙자료를 첨부  
→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에게 신청
  - ② 우편이나 FAX신청도 가능함(반드시 유선확인 요망)  
(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교통행정과, FAX : 2241-6557)
  - ③ 신청기한 (신청하지 않은 시설물은 감면 받을 수 없음)  
: 2015. 9. 10까지(미사용에 따른 금액을 부과 전에 감면받고자 하시는 분)  
(※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까지 신청 가능)
- 증빙서류 : 건물이 미사용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
예 :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- 부과기간(2014. 8. 1 ~ 2015. 7. 31)전부  
※ 세무서 또는 세무사 직인이 찍힌 서류  
② 전기 및 수도요금 영수증 사본, 관리비부과내역서 사본 등  
※ 공실의 사진만으로는 일정기간의 미사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함.  
※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없이 조사원의 실제조사만으로는 감면이 불가함.

○ 문의 : 성북구청 교통행정과 ☎ 2241-3402

## 성 북 구 청 장